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173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년 7월 2일

발 의 자 : 송재용 의원 외 5인

1. 주 문

- 대전광역시의회 “예산결산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, 기금운용계획안,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66조
-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
-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

지방자치법

제66조 (의안의 발의)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②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의회는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68조(예산안 심의)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
제72조(결산의 심사)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

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】

찬성의원명단

찬성의원	서명	비고
송재용	<u>송재용</u>	
전인중 대변인	<u>전인중</u>	
윤영세	<u>윤영세</u>	
곽영교	<u>곽영교</u>	
김복진 의원	<u>김복진</u>	
김희경	<u>김희경</u>	